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김태년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13670
----------	-------

발의연월일 : 2025. 10. 22.

발 의 자 : 김태년 · 홍기원 · 진성준
김한규 · 박홍배 · 김준형
남인순 · 김우영 · 박 정
윤종균 · 서영석 · 정태호
최혁진 의원(13인)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 법령에 따르면 첨단산업 분야의 인재혁신 활성화를 위하여 한국산업기술진흥원에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를 두고 있으며, 해외인재 유치와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에 ‘해외인재유치센터’를 두고 있음.

그런데 첨단산업 인재혁신 활성화와 해외인재 유치 업무는 그 업무 계획의 수립이나 구체적인 사업추진 과정에서 연계하여 운영할 때 효과를 더욱 증대시킬 수 있으므로, 업무협의를 운영할 필요가 있으며,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을 정기적으로 보고하도록 함으로써 업무 책임성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있음.

이에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운영, 첨단산업 인재혁신센터 및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업무 추진 상황 보고 등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는 한편, 첨단산업 지역인재 확보와 관련해 기업·교육기관·연구기

관의 연계를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첨단산업 분야 인재 양성 및 활용 효과를 증대하려는 것임(안 제21조의2 신설 등).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

첨단산업 인재혁신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4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 인재혁신센터는 제2항에 따른 업무의 추진 상황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장에 제2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제21조의2(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 구성·운영) ① 인재혁신센터와 제29조에 따른 해외인재유치센터의 연계 강화를 통한 효율적인 업무수행을 지원하기 위하여 대통령 소속으로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를 구성·운영할 수 있다.

- ② 제1항에 따른 첨단산업인재업무협의체의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22조제1항제1호 중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을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으로 하고, 같은 항 제2호 중 “교육기관”을 “교육기관·연구기관”으로 한다.

제29조의 제목 중 “설치”를 “설치 등”으로 하고, 같은 조에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④ 해외인재유치센터는 해외인재 유치 관련 업무의 추진 상황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통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대비표

[illegible]

을 추진할 수 있다. 1. 기업의 투자계획과 연계한 지방자치단체 및 교육기관과 의 협력을 통한 인재양성 2. 지역 내 교육기관과 기업이 연계한 인재양성 3. 4. (생 략) ② (생 략)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① ~ ③ (생 략) <신 설>	-----. 1. ----- 지방자치단체, 교육기관 및 연구기관----- ----- 2. -----교육기관·연구기관 ----- 3. 4. (현행과 같음) ② (현행과 같음) 제29조(해외인재유치센터의 설치 등)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해외인재유치센터는 해외인 재 유치 관련 업무의 추진 상 황을 산업통상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통 상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	---